

[홍콩] 2017년 10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(통관/검역/라벨링*/수출현안)

□ 주요내용

○ 10월 4일 우동사리 제품 판매 일시중지

- 식품 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에서는 759 Store에서 판매되는 삼립푸드의 진미우동 (250g * 5)제품의 나트륨 라벨링 표시가, 안전센터 테스트 성분 결과 와 불일치하여 일시 판매중지를 시행
- 식품안전센터 대변인은 진미우동 안에서 검출된 나트륨의 함량은 150mg/ 100g 이었으며, 영양 라벨링에 표시된 69mg/ 100g 와 다르게 검출. 또한,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제조회사와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, 해당 제품을 각 홍콩759매장에서 판매일시 중지를 발표함

□ 시사점

- 한국제품의 영양 라벨링 표시에 주의해야겠으며, 라벨링에 표시되는 정보의 유의하여, 수출 전 업체의 재확인 요망
- 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(2017.10.4.)
참고 웹사이트 : http://www.cfs.gov.hk/sc_chi/press/20171004_0942.html

1. 마카오 신선농산물 수입지침 (채소, 과일)

- 본 법률은 제 7/2003호 및 제 452/2011호 행정장관의 지시에 근거하며, 농산물 수입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강제적으로 위생검역을 받아야 함
- 그 중 도매형식으로 운영하는 채소는 도매시장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도매무역 및 검사검역을 받아야 하고, 민정총서는 마카오 각 입구관문의 검사검역작업을 책임져야 함
- 본 지침의 목적은 위에서 말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에게 제공하는 일반성 지침이고 의문이 있을 경우 본서에 문의함

* 여행객은 1kg이하의 자신이 사용할 박과류 및 과일을 지니고 입국할 수 있고 검사점역을 면제받을 수 있음

○ 신고절차

- 1) 수입상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
 - 이미 작성한 수입신고서(인무국에서 판매)및 복사본 1부
 - 업체류일 경우 원산지 정부가 발급한 농약사용보고서 및 김독카드 혹은 관련 위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
 - 신고서류번호 란에 경제국 관제 대외무역활동 등기번호를 표기해야 함
 - 도매를 위한 수입이 아닐 경우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해야 함
- 2) 수입상은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면 민정총서 위생감독부에 수입을 신고하고 위생검역을 예약할 수 있음
- 3) 신청인은 민정총서 도장을 찍은 신고서복사본을 지니고 자체로 세관통관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서 복사본을 지니고 예약한 시간에 위생검역장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
 - 주소 : 본마카오남완대마로762-804호 중화광장2자빌딩 민정총서종합서비스센터(위생감독사무)
 - 전화 : (853) 2833 7676, 8795 2643, 8795 2646

- 팩스 : (853) 8795 2655

- 비용

- a) 제 268/2003호 행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(부분경제 109/2005호 행정정관 지시수정) 검역비용은 검역 받는 식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결정함
- b) 제 1/2012호 행정장관 지시에 따라 2012년도 《민정총서의 비용, 징수 및 가격표》 제 92조, 제 94조부터 제 97조에서 규정한 검역비용은 징수하지 않음

- 주의사항

- a) 품종이 특수하면 학명을 표기해야 함
- b)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품종으로 국제무역공약의 제약을 받는 물건은 반드시 경제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
- c) 도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례를 준수해야 함
- d) 본부의 검역인원은 수입농산품의 샘플을 취하여 검측해야 함
- e) 수입상은 마카오 기타 관련 법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
- f) 화물을 수입할 때 화물과 제공한 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할 때 유효한 위생증명 혹은 검역검사증명이 불합격일 경우 화물의 통과는 거부되며 원래의 산지로 반송함. 이로 인한 손실 및 비용은 수입자가 책임져야 함

<참조: <http://www.iacm.gov.mo/sis/guide/show.asp?id=1>>

2. 마카오 육류, 산짐승 및 기타 동물 수입지침

- 마카오법률 제 7/2003호 및 제 452/2011호 행정장관의 지시에 근거하여 육류, 산짐승 및 기타 동물원 제품 수입은 반드시 신고하고 강제적 위생검역을 받아야 함
- 그 중 도매형식으로 운영하는 살아있는 가금류, 야생동물류 등 작은 동물 및 알류는 반드시 도매시장에 진입하여 도매무역 및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고, 민정총서는 마카오 각 관문의 검역검사사업을 책임지고 있음
- 본 팜플렛의 목적은 상기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며

의문이 있을 경우 본서에 문의 바람.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음

- 1) 수입상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함
 - 법률 제 7/2003호 및 제 452/2011호 행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동한 화물의 요구에 따라 관련 화물의 수입허가 및 수입신고서(인무국 판매)및 복사본 1부
 - 화물의 국제위생증명서류
 - 신고 서류 번호 란에 경제국관제 무역활동 등기번호를 표기
 - 냉장육류, 급속냉동육류 혹은 육류제품은 반드시 본서에서 발급한 수입냉장육류, 급속냉동육류 혹은 육류제품 장소등기를 제출해야 함
 - 살아있는 가금류는 반드시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증명을 제출해야 함
 - 도매용도가 아닌 수입자는 반드시 증명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성명을 해야 함
- 2) 수입상은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1일전에 민정총서 위생검독부에 수입 검역예약을 할 수 있음
- 3) 신청인은 본서의 도장이 날인된 허가증 혹은 세관신고 복사본을 지니고 자체로 세관통관을 진행하거나 허가증 및 신고서 복사본을 지니고 예약한 장소에서 검역을 대기함
 - 지점 : 마카오 남완대마로762-804호 중화광장2자빌딩 민정총서종합서비스 중심民(위생감독사무)
 - 전화 : (853) 2833 7676, 8795 2643, 8795 2646
 - 팩스 : (853) 8795 2655
 - 비용
 - a) 제 268/2003호 행정장관 지시(부분경제 109/2005호 행정장관 지시 수정), 검역비용은 검역식품의 종류 및 수량에 근거하여 정함
 - b) 제 1/2012호 행정장관 지시, 2012년도 《민정총서의 비용, 징수 및 가격표》 제 92조, 제 94조부터 제 97조에서 정한 검역비용은 징수하지 않음
 - 주요사항
 - a) 야생동물 혹은 특수한 품종은 반드시 학명을 표기해야 함
 - b)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공약 규제 종은 반드시 경제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
 - c) 도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례를 준수해야 함

- d) 검역인원은 화물이 마카오에 도착 후 검역을 진행함
- e) 모든 수입식품은 응당 제 50/92/M호 법령(경제 7/2004호 행정법규 및 제 56/94/M호 법령수정) 관련 식품라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
- f) 수입상은 마카오 기타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함
- g) 화물을 수입할 때, 화물과 제공한 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유효한 위생 증명을 제시하지 않거나 검역증명 불합격 시 화물의 통과를 거부함 수입상은 이로 인한 모든 손실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

<참조: <http://www.iacm.gov.mo/sis/guide/show.asp?id=2>>

III

통관문제사례

- 해당사항 없음